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 4. 11.)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공무원직급표를 개편하는 동시에 민간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42조)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 (안 별표 1)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함

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의4)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조문상 개방형 직위 외의 4급 이상 임기제 선발시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상에도 신규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8. ~ 7.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술직렬”이란”을 ““과학기술직렬”이란”으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2조의4제6항제1호 중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제5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를 “법 제43조제2항제1호”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병가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 후단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을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으로 한다.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부이사관	과학기술 서기관	공업 사무관	공업 주사	공업 주사보	공업 서기	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일반농업			농업 사무관	농업 주사	농업 주사보	농업 서기	농업 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임업	생명유전			임업 사무관	임업 주사	임업 주사보	임업 서기	임업 서기보
		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	수의			수의 사무관	수의 주사	수의 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해양수산 사무관	해양수산 주사	해양수산 주사보	해양수산 서기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 시설							
	기상	기상			기상 사무관	기상 주사	기상 주사보	기상 서기	기상 서기보
		지진							
	보건	보건			보건 사무관	보건 주사	보건 주사보	보건 서기	보건 서기보
		방역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사무관	의료기술 주사	의료기술 주사보	의료기술 서기	의료기술 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사무관	식품위생 주사	식품위생 주사보	식품위생 서기	식품위생 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의무 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약무 사무관	약무 주사	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간호 사무관	간호 주사	간호 주사보	간호 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 사무관	간호조무 주사	간호조무 주사보	간호조무 서기	간호조무 서기보
	환경	일반환경	부이사관	과학기술 서기관	환경 사무관	환경 주사	환경 주사보	환경 서기	환경 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항공 사무관	항공 주사	항공 주사보	항공 서기	항공 서기보
		조종							
		정비							
		관제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무관	시설 주사	시설 주사보	시설 서기	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재안전 사무관	방재안전 주사	방재안전 주사보	방재안전 서기	방재안전 서기보
	전산	전산개발			전산 사무관	전산 주사	전산 주사보	전산 서기	전산 서기보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 사무관	방송통신 주사	방송통신 주사보	방송통신 서기	방송통신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송무대 기술			방송무대 사무관	방송무대 주사	방송무대 주사보	방송무대 서기	방송무대 서기보
		방송제작							
	운전	운전			운전 사무관	운전 주사	운전 주사보	운전 서기	운전 서기보
	위생	위생			위생 사무관	위생 주사	위생 주사보	위생 서기	위생 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조리 사무관	조리 주사	조리 주사보	조리 서기	조리 서기보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 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직업상담 주사보	직업상담 서기	직업상담 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 주사	세무 주사보	세무 서기	세무 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 주사	관세 주사보	관세 서기	관세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 주사	감사 주사보	감사 서기	감사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방호 서기보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주사	토목운영 주사보	토목운영 서기	토목운영 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건축운영 주사	건축운영 주사보	건축운영 서기	건축운영 서기보	
		목공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주사	통신운영 주사보	통신운영 서기	통신운영 서기보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주사	전화상담 운영 주사보	전화상담 운영 서기	전화상담 운영 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주사	전기운영 주사보	전기운영 서기	전기운영 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주사	기계운영 주사보	기계운영 서기	기계운영 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주사	열관리 운영 주사보	열관리 운영 서기	열관리 운영 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화공운영 주사	화공운영 주사보	화공운영 서기	화공운영 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주사	선박항해 운영 주사보	선박항해 운영 서기	선박항해 운영 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주사	선박기관 운영 주사보	선박기관 운영 서기	선박기관 운영 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농림운영 주사	농림운영 주사보	농림운영 서기	농림운영 서기보
		원예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주사	산림보호 운영 주사보	산림보호 운영 서기	산림보호 운영 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보건운영 주사	보건운영 주사보	보건운영 서기	보건운영 서기보
	사무운영	조무운영				사무운영 주사	사무운영 주사보	사무운영 서기	사무운영 서기보
		타자운영							
		전산운영							
		제도운영							
		필기운영							
		사서운영							
		편집운영							
		집배운영							
		기상관측 운영							
		감식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2조의4제7항, 제30조, 제47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1의 기술직군 및 기술서기관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직군 및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해양수산직렬의 표지운영직류는 해양교통시설직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직군 및 기술서기관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직군 및 과학기술서기관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며, 해양수산직렬의 표지운영직류는 해양교통시설직류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직군과 기술서기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며, 해양수산직렬의 표지운영직류는 해양교통시설직류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 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 ----- ----- ----- ----- “과학기술직렬”이란 ----- 과학기술직군-----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 ----- -----.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다른 결원보충의 경우 2. (생략) <u><신설></u>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 4. (생략)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u>기술직렬</u>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u>법 제43조제2항</u>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	----- 2. (현행과 같음) <u>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u>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과</u> <u>학기술직렬</u> ----- --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 ----- <u>법 제43조제3항</u>----- -----
---	--

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

-----.

② -----

-----.

③ 법 제43조제2항제1호-----
----- 병가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신 설>

<신 설>

<신 설>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

---. -----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
-----.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법 제43조제3항-----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

1. ----- 제4항-----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 4. (생략)

② ~ ⑧ (생략)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표지운영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

----- 해양교통시설
직류-----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1. ~ 3.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